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9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 내용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반영

- 1) 용어 변경(안 제20조의2·제48조·제61조)
- 2) 인용조문 변경(안 제7조· 제8조·제31조·제33조·제35조·제58조)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 신설(안 제15조제1항)

다.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완화적용 사유 삭제(안 제20조의3제3항)

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정비(안 제15조의2·제26조·제30조)

- 1)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 2)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 계수
- 3) 이행보증금의 예치

마. 법령위임 필수조례 신설(안 제16조의2·제57조의3)

- 1)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3년
- 2)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 30퍼센트

바. 개발행위허가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범위를 법에서 정한만큼 최대한 확대하여 반영(안 제27조)

사. 경남도 적극행정실현 소극행정 특정감사 지적사항 정비(안 제57조의2·제61조의5·제71조)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2)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심의 종결 후 30일 후

아. 공동위원회 준용 신설(안 제74조의2)

자. 법령개정사항 반영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개정(안 별표 1~별표 5, 별표 12, 별표 14, 별표 18, 별표 2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0조·제28조·제28조·제59조·제68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5조·제43조·제57조·제59조·제72·제76조·제78조·제85조·제93조·제113조의3, 별표 1의2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담당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7. 30.~8. 19.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조·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등)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군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의견청취)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군기본계획안을 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나누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해당 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 안에서 읍·면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그 결과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군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등 혐오시설로서 이해관계인의 갈등이 예상되는 군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과 함께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조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으로 하고,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기존 조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① 영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차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다만, 완화범위는 영 제84조 및 제85조의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오차를 수정한 면적기준 건폐율, 용적률은 소수점 이하자리에서 올림 한다)”를 말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퍼센트 이내에서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의3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3. 건축물 위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서 “군계획조례에서 정한 기준”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를 분할하는 택지식 형태의 분할 및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 형태로 필지를 분할하는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 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 4. 녹지지역: 0.4
-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 변경
- 2.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 변경
-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란 같은 목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예치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31조제2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1조제3항 및 영 별표23제2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란 다음 각 호의 제한을 말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영 제72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영 제72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청소년 전자유기장”을 “청소년게임제공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요양소 및 장례식장”을 “요양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80조에서 “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물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49조 조 제목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을 “(보호지구안에서 건축제한)”으로 하고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76조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심의를 거친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76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전통시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70퍼센트
2. 상업지역: 90퍼센트

제57조의3(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제58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기존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를 말한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군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은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목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을 이하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폐수 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1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의4(임대주택·기숙사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용적률의 20퍼센트를 말한다.

②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 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를 말한다.

제6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5(전통시장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500퍼센트
2.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와 장소,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1조(회의록의 공개) 영제113조의3제1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공동위원회에 관한 준용)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4조, 제65조, 제65조의2,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제75조)을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별표 12, 별표 14, 별표 18,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u></p> <p><u>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u></p> <p><u>③ 제2항에 의한 자문을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거창군 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u></p>	<p><u>제4조(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등)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군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u></p>
<p><u>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u></p> <p><u>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u></p> <p><u>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u></p> <p><u>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u></p> <p><u>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u></p> <p><u>⑤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당해 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 안에서 읍·면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u></p> <p><u>⑥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u></p>	<p><u>제5조(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의견청취) ① 군수는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군기본계획안을 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나누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p> <p><u>②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해당 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 안에서 읍·면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u></p> <p><u>③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u></p> <p><u>④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그 결과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군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u></p>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 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군 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로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군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신 설>

제7조(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등 혐오시설로서 이해관계인의 갈등이 예상되는 군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과 함께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제15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① 영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삭제 2014.10.01>

2.~7. (생략)

<신설>

②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현행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차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다만, 완화범위는 영 제84조 및 제85조의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오차를 수정한 면적 기준 건폐율, 용적률은 소수점 이하 자리에서 올림 한다)”를 말한다.

<신설>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20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및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20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퍼센트 이내에서 감소 또는 증가하는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주민과 군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별표 23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주민동의가 있고, 지역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퍼센트 이내에서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삭 제>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서 “군계획조례에서 정한 기준”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를 분할하는 택지식 형태의 분할 및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 형태로 필지를 분할하는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신 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2만제곱미터 미만
 - 나. 공업지역: 면적 4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4. 기존 부지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제26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 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 에 서 “조례에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 변경
2.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 변경
-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란 같은 목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예치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 등)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산정방식은 관련 표준 품셈 등에 의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 연장 등으로 1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1년 마다 공사비를 재산정하여 추가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2. (생략)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과 같다.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15. (생략)

제35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특화경관

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삭제>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1조제3항 및 영 별표23제2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란 다음 각 호의 제한을 말한다.

1.~22. (현행과 같음)

<삭제>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영 제72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15. (현행과 같음)

제35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영 제72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15. (생략)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15. (현행과 같음)

<삭제>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
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
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당구장, 청소년 전자유기
장, 장의사

2.~5. (생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
소 및 장례식장

7.~14. (생략)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
로 쓰는 시설

16. (생략)

<신 설>

제49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
축제한) <신 설>

<삭 제>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건
축제한) 영 제80조에서 “군계획조례
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
술소, 단란주점, 당구장, 청소년계
임제공업소, 장의사

2~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7.~14. (현행과 같음)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
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물

16. (현행과 같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
호의 장례시설

제49조(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에서 “조례가 정
하는 건축물”이란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
심의를 거친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몰, 대형점

5.~15. (생략)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①~③ (생략)

④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② 영 제76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5.~15. (현행과 같음)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7. (현행과 같음)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57조의2(전통시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70퍼센트

2. 상업지역: 90퍼센트

제57조의3(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①~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⑤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1.~2. (생략)

제61조(공공시설부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가.~나. (생략)

② (생략)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④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를 말한다.

1.~2. (현행과 같음)

제61조(공공시설부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군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은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목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폐수 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1조의4(임대주택,기숙사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 시 허용하는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신 설>

제6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제61조의4(임대주택·기숙사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균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용적률의 20퍼센트를 말한다.

②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서 “균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를 말한다.

제61조의5(전통시장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균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500퍼센트
2.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제6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성으로 의결한다.

제7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장 보칙

제7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와 장소,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1조(회의록의 공개) 영제113조의 3제1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제74조의2(공동위원회에 관한 준용)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4조, 제65조, 제65조의2,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산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 관련)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집회 시설 중 같은 호 라목·마목(동물원 제외)의 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계 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정신병원 제외)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 다. 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도료류 판매소(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식물 관련시설 중 화초·분재 등의 온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 관련)

※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7층 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7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삭 제>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연장·집회장·전시장, 식물원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계 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정신병원 제외)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세워진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9. 별표 3 제9호 및 제10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사목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아목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다목(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사격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9. 별표 3 제9호 및 제10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사목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아목(주기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연구소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신 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 관련)
 영 별표 15 제1호·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농가 주택(기존주택은 증축·개축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사목·아목·차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 관련)
 영 별표 16 제1호·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너목으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 판매시설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교육

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생산물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아목에 해당하는 것 <삭 제>~~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삭 제>~~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다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신 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 관련)

1. 영 별표 19 제1호·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정한다.
2. 영 별표 19 제2호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에 한정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액화가스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 도료류 판매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다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 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신 설>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미술관·체험관에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 및 아목은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다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